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속도로등 통행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과태료 전환〉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99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4.
3. 회부연월일 : 2025.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함) 외의 차마(車馬)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속도로등의 통행위반 행위의 벌칙 부과는 전과와 낙인 효과 등 과도한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로도 충분히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고속도로등의 통행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부과를 지양하여 사회적으로 범죄자 양성을 줄이는 동시에 의무

이행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6호 삭제, 제160조 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함)의 통행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6호 삭제, 제160조 제2항 신설 등).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154조(벌칙)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삭제>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제160조(과태료) ① (생략)	제1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 4. (생략)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도경찰청장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	⑤ 제4항에도----- ----- ----- -----. 1. ~ 4. (현행과 같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4항까지의----- ----- ----- -----. 1. -----제4항까지 ----- ----- ----- ----- ----- ----- ----- ----- ----- 2. -----

현행	개정안
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u>제2항</u> (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제50조제1항·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제3항 및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u>및 제3항</u>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u>제3항</u> (----- ----- ----- ----- ----- <u>및 제4항</u> ----- ----- ----- ----- ----- -----
3. <u>제160조제2항제4호의3</u> ·제4호의4·제4호의5·제10호 및 같은 조 <u>제3항</u> (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3. <u>제160조제3항제4호의3</u> ----- ----- ----- <u>제4항</u> (----- ----- ----- ----- ----- -----
4. <u>제160조제2항제4호의3</u> ·제4호의4·제4호의5의 과태료: 교육감	4. <u>제160조제3항제4호의3</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3조¹⁾는 고속도로등이 자동차의 고속주행을 전제로 설계·운영되는 도로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정함) 외의 차마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통행·횡단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음. 이는 고속도로등에서 보행자·자전거 등 비자동차 교통주체가 개입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점을 반영한 규율로 볼 수 있음.

한편, 고속도로등 통행위반은 고의적 위반뿐만 아니라 길 착오·진입 실수 등 비고의적 사유로 발생할 가능성도 상정되는바, 경미·우발적 위반에 대하여까지 형사처벌을 부과할 경우 전과 기록에 따른 낙인 및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실효성은 유지하되 과잉한 형벌 부과를 지양하려는 개정 취지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음.

다만,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경우 제재의 성격이 행정질서벌로 바뀌어, 규범 준수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되고 위반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특히 고속도로등 위반행위는 결과 발생 이전이라도 이미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과태료 전환이 안전 확보 목적에 비추어 적정한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요구됨.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경찰청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1)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단 통행·횡단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단순한 질서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할 경우 법규 준수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아울러 과태료로 전환될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강제 조치를 통해 위험을 제거하기 어려워져, 고속도로 현장에서 신속한 위험 차단 및 국민의 생명 보호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44

[참고자료]

<이륜자동차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주행금지 관련 해외 처벌 사례>

구분	대만	중국	태국	한국
처벌	행정벌	행정벌	행정벌	형사벌
법령	도로교통관리 처벌조례	도로교통안전법	육상교통법	도로교통법
금액	3,000 ~ 6,000 타이완달러	100 ~ 200위안	500 ~ 1,000 바트	3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비고	현장에서 이륜차 압류 또는 견인조치	- 벌점(3점) 부과 - 일부지역에서만 금지	-	-

※ 우리나라는 OECD(38개국)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상 이륜자동차 통행금지